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재봉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9205
----------	-------

발의연월일 : 2026. 6. 12.

발 의 자 : 송재봉 · 김남근 · 김남희  
이연희 · 한준호 · 이용선  
박홍배 · 김우영 · 김문수  
박 정 · 황명선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매점매석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매점매석 행위는 물품의 수급 불안이나 가격 급등 상황에서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형사처벌만으로는 위법행위로 얻은 경제적 이익을 실질적으로 환수하는데 한계가 있음.

또한, 형사처벌 중심의 제재는 수사, 기소, 재판 절차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어 신속한 물가안정 대응에 한계가 있고, 경제질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보다 더 큰 불이익을 부과하는 방식이 제재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음.

이에 매점매석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매점매석 행위로 얻은 부당이득액의 3배 이내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하려

는 것임(안 제7조의2 신설 및 제26조).

##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과징금) ① 주무부장은 제7조를 위반하여 매점매석 행위를 한 자에게 해당 행위로 인하여 얻은 이익의 3배 이내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매점매석 행위로 얻은 이익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거래금액, 물품의 보관 또는 반출제한 물량의 가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산정기준, 부과·징수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주무부장은 제1항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과징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26조 중 “1억원”을 “3억원”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징금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매점매석 행위를 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lt;신    설&gt;</p>	<p>제7조의2(과징금) ① 주무부장관은 제7조를 위반하여 매점매석 행위를 한 자에게 해당 행위로 인하여 얻은 이익의 3배 이내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매점매석 행위로 얻은 이익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거래금액, 물품의 보관 또는 반출제한 물량의 가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p> <p>③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산정기준, 부과·징수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④ 주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과징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p>
<p>제26조(벌칙)    제7조를 위반하여</p>	<p>제26조(벌칙) -----</p>

매점매석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u>1억원</u> 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	----- ----- <u>3억원</u> ----- -----.
---	---